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7일, 엄태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엄태영의원)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법은 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으며,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¹⁾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엄태영의원안은 해당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영세어민을 지원하고 출원으로 인한 어업권 등 취득 유인을 제공

1)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함(「수산업법」 제17조제1항).

하여 어업·양식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최근 어촌 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어촌경제의 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